

I 추진 목적 및 개요

□ 추진 목적

- 한국어의 세계화 및 한국어 교육 확산에 기여한 한국어 보급 관련 국내·외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

□ 추진 근거

- 「정부 표창 규정」(대통령령 제34460호, '24.4.30.) 및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(행정안전부, '20.1.1.) 및 「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」('26.3.30.)
- 「2026년도 교육부 장관표창 총량 배정결과 및 운영 방향 안내」(운영지원과-5399, '26.2.23.)
- 「2026년 국제교육기획관 장관표창 시행계획(안)」(국제교육정책담당관-919, '26.3.11.)

□ 표창 개요

- (훈격) 교육부장관 표창
- (표창 규모) 6점
- (대상) 해외 한국어 보급 유공 내·외국인 한국어 교육자 및 연구자, 교육행정가 등 교육기관 관계자 등

※ 금년도부터 추천 대상에서 한국 공무원 제외

분야	내용
한국어 교육자·연구자	· 해외 정규 학교 한국어 교육자 중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한국어를 지도하여 타 한국어 교육자에게 모범이 되는 자 · 한국어교육 관련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정규 교육제도 내 한국어교육 확대에 기여한 국내·외 한국어 교육자·연구자
교육행정가 등 교육기관 관계자	· 해외 정규 교육제도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기여한 해외 학교장, 현지 교육청·교육부·교육기관 교육행정가

II 세부 계획

□ 표창 기준

- (수공 기간)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
- 해외 초·중등학교에 정규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채택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사람
-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 기반 구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
- 외국인인 경우 한국어를 채택한 현지 초·중등학교의 교장을 포함한 교원, 주재국 정부 행정가 등으로서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사람

※ 한국 공무원은 대상 아니나, 해외 공무원 등 외국 정부 관계자는 추천 가능(일반인)(공무원이 아닌 사람) 기준 적용)

- (재표창 금지) 수여 예정인 공적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 공적표창(모든 분야)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추천 제한

공 통

- 재표창 금지 기간 내 추천되는 사람
 - ※ 다만, 장관상, 퇴직자 표창,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
- 각종 언론보도,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
-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
-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표창 또는 정부포상을 수상한 사람(국무총리표창 이상)

- 과거 망언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
-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, 비판 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일반인(개인)

-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

- ①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
- ②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
-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

- 최근 3년 이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* 등

*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- 최근 3년 이내에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에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□ 표창 취소 대상 및 절차

- (대상)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

※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향후 3년간 장관표창 추천을 제한함

- (취소 절차) 당사자에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후, 공적심사위원회에 표창 취소 안건 상정
- (상훈대장 삭제) 해당 표창 증서를 회수하고 상훈대장에서 삭제

Ⅲ 행정사항

□ 제출 기한 : '26. 5. 8(금) [한국시간 기준]

※ 기한 내 도착한 추천 서류만 인정

□ 제출 서류

- ① 추천 대상자 명부(서식 1)
- ② 공적조서(서식 2) ※ 조사자(기관 인사담당자)와 추천관(기관장) 날인
-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(서식 3)
- ④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※ 기관자체 양식
- ⑤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※ 기관자체 양식

※ 포상업무 지침상 추천 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결격사유(징계, 형·사회적 물의 여부 등)가 없음을 확인 후 심사의결서에 명시

□ 이메일로 제출 (KECID@KOREA.KR)

□ 제출 관련 서류 및 서식 문의

※ 인도네시아 한국교육원 KECID@KOREA.KR +6221 2168 9137